

의안 번호	2532	【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 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2. 5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18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22.(월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, 「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연도말 기금조성액: 2,065,664천원

(단위 : 천원)

2024년도 말 조성액 ㉠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 ㉡ = ㉢ + 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 = ㉢ - ㉣	
2,034,741	98,959	68,036	30,923	2,065,664

나. 변경내용

- 1) 수입계획: 83,060천원 → 98,959천원(15,899천원 증)
 - 가)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: 67,000천원 → 67,400천원
 - 나)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증액: 2,560천원 → 2,680천원
 - 다) 그 외 수입 증액: 2,300천원 → 27,779천원
 - 라)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감액: 11,200천원 → 1,100천원
 - 마) 예치금회수 수입 증액: 2,032,421천원 → 2,034,741천원

2) 지출계획: 161,156천원 → 68,036천원(△93,120천원, 57.7%)

가) 비용자성사업비(탈수급자 사회보험료) 감액: 7,200천원 → 4,080천원

나) 용자성사업비(용자금대여) 감액: 100,000천원 → 10,000천원

다) 예치금 증액: 1,954,325천원 → 2,065,664천원

※ 정책사업(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) 지출금액의 20% 이상 초과 변경하여
지방의회 의결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「2025년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자활기금 운영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기금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임.
-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, 기금의 경우 집행과정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나, 당초 계획대비 50%이상 사업비가 감액되어 향후에는 당초 계획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